

8.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중개정령

건설교통부령 제225호 1999. 12. 30

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중 "국도유지건설사무소"를 "국도유지건설사무소(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"로, "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·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"을 "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"으로 한다.

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장의2.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

제22조의2(위치 및 관할구역)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.

제22조의3(하부조직의 설치 등) ①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하부조직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소관사무

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강화출장소를 둔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하부조직·업무분장·관할구역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고,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.

별표 2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3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삭제한다.
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별표7(지방국도관리청공무원정원표), 별

표 13(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무원정원표), 별표 14(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

공무원정원표) 생략

[별표 2의2]

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(제22조의2관련)

구 분	위 치	관 할 구 역
수원국도 유지건설 사무소	경기도 용인시	인천광역시의 강화군 및 옹진군 일원의 국도 경기도 화성군, 평택시의 팽성읍·진위면·서탄면·고덕면·오성면·청북면·포승면·현덕면·안중면, 용인시의 기흥읍·포곡면·모현면·구성면·수지면·백암면·양지면·이동면·원삼면, 이천시의 부발읍·장호원읍·설성면·신둔면·마장면·호법면·대월면, 광주군, 안성군, 김포군, 여주군 일원의 국도
전주국도 유지건설 사무소	전라북도 전주시	전라북도 군산시의 옥구읍·나포면·성산면·옥도면·옥산면·옥서면·회현면·개정면·대야면·서수면·임피면, 익산시의 함열읍·금마면·낭산면·망성면·삼기면·성당면·여산면·오산면·왕궁면·용동면·용안면·용포면·춘포면·함라면·황등면, 완주군, 김제시 공덕면·광활면·금구면·금산면·만경읍·백구면·백산면·봉남면·부량면·성덕면·용지면·죽산면·진봉면·청하면·황산면, 부안군, 정읍시의 신태인읍·고부면·덕천면·북면·산내면·산외면·소성면·영원면·이평면·입암면·정우면·감곡면·용동면·칠보면·태인면, 진안군(진안읍 군하리부터 완주군계까지의 국도 제26호선에 한한다) 및 고창군 일원의 국도

주택회보